

울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1332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임준규

피고F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변론 종결2024. 10. 24.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피고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 12. 30. 접수 제135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G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촌동생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G의 전 배우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21. 12. 1. I와 사이에, I에게 울산 남구 J, K, L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5억 원(계약금 40억 원, 잔금 2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잔금 25억 원 정이며, PF대출 발생 시 즉시 이행하도록 명시한다. 단, 잔금의 지급 시기는 PF대출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다. 망인, I, G은 2022. 1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증서 2022년 제259호로 'I가 망인에게 매매대금 잔금 25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23. 3. 31.에 9억 원, 2023. 8. 31.에 9억 원, 2023. 12. 31.에 7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G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G은 2022. 12.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359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3. 2. 6. G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한편 망인은 2023. 11. 2.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G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위 연대보증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G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가)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2. 12. 30. G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377,285,776	G에 대한 2022. 7.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과세표준액 참조
2	울산 중구 N센터 2층 O호	33,149,088	등 부과에 관한 과세표준액 참조
3	울산 중구 N센터 2층 P호	33,149,088	
4	울산 울주군 Q건물 R호	297,000,00	2024. 8. 30. 기준 시세이나,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2022. 12. 30.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본다.
5	(차량번호 1 생략)(비영업용, 적재정량 800)	28,500	G에 대한 2022. 7.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과세표준액 참조
6	(차량번호 2 생략)(비영업용, 적재정량 1000)	28,500	
7	(차량번호 3 생략)(비영업용, 배기량 1998)	399,600	
합계	473,740,552		

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2. 12. 30. G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2018. 4. 17.	주식회사 T	대출채무	268,260,106
2019. 2. 25.				
2022. 4. 13.				
2	2022. 12. 26.	망인	연대보증채무	2,500,000,000
합계	2,768,260,106			

다) 소결론

2022. 12. 30. 기준 G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2,294,520,214원(=소극재산 2,768,260,106원 - 적극재산 473,739,892원) 초과하였는바, G의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된다.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망인(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G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G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달 후인 2023. 2. 6.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 점(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5 판결 등 참조), G과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부상 기재를 넘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G은 망인에 대하여 I의 잔금지급채무 25억 원을 연대보증한 후 불과 4일 만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의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의 배우자로서 G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G과 피고 사이에 2020.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한기

별지